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 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
-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원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금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 및 재정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기본방향을 명시(안 제1장)
- 나. 금융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금융산업 육성범위, 금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 조세감면 제도 수립, 기업 및 외국인 투자촉진 등을 명시(안 제2장)

다.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간사, 회의 및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3장)

라. 보칙으로 공무원 파견, 행정지원, 권한위임, 규칙 근거조항을 명시(안 제4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7(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IFEZ”라 한다)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업 유치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 산업”이란 IFEZ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중심지”와 국내·외 금융기관과 제5조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한 금융산업을 말한다.
2. “금융산업 육성사업”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시행자가 IFEZ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IFEZ가 동북 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 ②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세제지원·임대료 감면,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금융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환경 분석
 2. 입지여건 및 실태
 3. 금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금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금융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제공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금융산업 육성범위) 금융산업 육성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금융중심지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3.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기업지원
4.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내·외 기업유치,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육성,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등 경영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5. 해외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특화금융의 개발·지원
6.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7. 주택,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 개선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
9. 기타 금융중심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추진)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융 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금융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4. 기타 시장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②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의 각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 ① 시장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유재산 감면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금융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의2에 의거 금융산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당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용도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부지조성, 의료·교육시설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융중심지내 금융산업 종사자에 대해서 주택 임대 및 분양, 자녀 교육 기회, 의료기관 이용 등에 있어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방법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금융중심지내에서 관련 금융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인천신용보증조합의 보증
3.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
4. 금융산업 관련 건축물 등의 조성·분양 및 임대
5.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세감면 제도 수립) 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1호에 의한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금융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단체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이하 “기업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라 한다)를 금융중심지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밖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금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금융산업 진흥기금 설치 등) 시장은 금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어 서비스 등 정보제공) ① 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의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제공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경상거래의 지급) 금융중심지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옴부즈만 및 상사중재) ① 시장은 금융중심지내 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융중심지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노동규제 완화)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배제, 의무휴급일 및 유급 여성 생리휴가 배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상업무 및 파견 기간 제한 규정 배제 등 노동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

제3장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제16조(금융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금융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4. 경제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융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금융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지원) 시장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육성
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지원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②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는 시·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기준을 참작한다. <개정 2005.4.28>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업종 및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8>

제19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
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
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
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
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
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
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
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
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
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

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5.1.5>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2008.2.29>

⑦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8.2.29>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⑪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2005.1.5, 2005.12.31>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⑬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2.9, 2008.2.22>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